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인증제도(하)

손 철호 / 임정연구회, 농학박사

〈전호에서 계속〉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선진국 및 목재생산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하여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인증제도는 국제기구 또는 독립된 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게 산림을 관리하였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주들이나 독립가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글은 World Wildlife Fund(WWF)에서 발행한 산림인증제도에 관한 소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4. 산림인증은 어떻게 실행되는가?

4.1. 정의

산림인증제도는 결과적으로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독자적인 제3자에 의해 목재가 생산된 산림의 장소와 관리상태를 심사한 가운데 발행되는 것으로 보통 2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산림관리의 인정 혹은 산림감독 이것은 특정 기준에 비추어 현장에서

의 산림관리상황의 검사와 문서상의 관리계획과 산림자원상황 등에 관한 심사를 포함한다. 산림관리별, 산림소유자별, 지역별 그리고 국별과 같이 산림관리의 인증제도는 여러가지 레벨에서 수행된다. 현상의 인증은 산림관리레벨에서 행해질 수 있다.

② 생산물 인증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판매행동에 영향을 미칠려면, 인증은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산림으로부터 상점의 진열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공정을 추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원

목의 수송, 1차가공, 선적 그리고 2차 가공을 포함한 전체의 생산·가공·유통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4.2. 목 적

인증제도에는 ①산림관리의 개선 ②인증된 목재의 시장진입의 확보 등 2개의 주된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NGO들은 첫 번째 목적을, 그리고 소매상 및 목재무역업자들은 두 번째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관심이 다른 것은 다소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지만, 인증제도는 양자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총

족되어야 한다.

① 산림관리의 투명성과 규제의 개선 특히, 불법벌채에 대하여

② 로열티, 산림세금, 그리고 기타비용의 높은 회수율

③ 산림관리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금의 증액

④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논쟁의 해소

⑤ 목재나 목재가공품 생산비용의 환경적 비용의 내부화

⑥ 중개업자의 잠재적인 감소로 산림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생산라인의 전체적인 생산력의 증강과 비용의 절감

또한,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2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구 분	요 구 사 항
첫 번째 목적	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지역상황에 적합한 것일 것 ② 목적추구형이고 효과적인 것일 것 ③ 전체 관련자들이 납득가능할 것 ④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칙과 부합되고, 국내의 산림관리기준에 준할 것
두 번째 목적	① 목적과 측정 가능한 기준을 기초로 할 것 ② 신뢰할만하고 독립적인 평가에 기초할 것 ③ 소득권익을 갖는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비용효과가 클 것 ⑤ 투명할 것 ⑥ 개발도상국에 형평성을 가질 것

4.3. 산림인증제도와 자유무역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인증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단지 열대재뿐만 아니라 목재나 목재가공품의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자발적 속성은 GATT(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기구, WTO는 그의 협정의 기초해 설립되었다)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다. GATT의 20조에는 생산수단을 이유로 제품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무역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재생산의 수단은 근본적으로 산림관리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

는 것은 1990년의 오스트리아 법률처럼 지속가능한 관리하에서 생산된 목재와 그렇지 않는 목재에 대하여 차별하는 법은 GATT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흔한스럽게도 GATT의 20조(b)에는 인간, 식물 및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제한적인 무역조치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GATT의 논쟁처리패널에서는 이 조항은 영토 외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즉, 자국의 산림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는 인정되지만 타국의 산림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적인 인증제도는 무역왜곡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에 특정 상품의 소비여부의 결정은 소비자의 몫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증제도는 GATT의 룰을 위배하지 않는다.

5. 성공의 열쇠

5.1. 정책요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단지 국가(및 국제적) 정책이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관련 모든 분야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규정된다면 성취가능하다.

이것은 당초의 목적이 목재생산에 있던 과거보다도 산림관리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장래에 이르러서는 산림과 그 생산물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관계자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인증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 ①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정부의 확약
- ② 영구적인 산림구역을 선택하는데 있어 적절한 정치적 시스템
- ③ 일단 이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 장래에 대한 보증
- ④ 임산물시장의 확보
- ⑤ 산림구역의 선택과 관리계획·설시방법을 검토할 충분한 정보
- ⑥ 계획과 실시를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동적인 체제
- ⑦ 관리를 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
- ⑧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폭넓은 요구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산림부서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는 산림관리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규제조치를 취하면서도 인증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만일 시장에서 인증제도를 요구하고 그것에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 또 한편에서는 위의 요구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일부는 단지 정부에 의해서 제공가능하다는 등 다소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다소 지나친 것 같다. 인증제도는 법률, 규제, 정책 그리고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정책골격을 설정하도록 도와준다면 인증제도는 그로부터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기준과

지표(C&I)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증제도와 정부간 프로세스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갖는다. 유럽에서의 헬싱키 프로세스, 남미의 Tarapoto프로세스, 그리고 온대 및 한대림 국가들의 몬트리올 프로세스 같은 것들의 목적은 각국의 산림상태에 대하여 국가적 수준에서 가능한 정보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인증제도는 기술적이기 보다는 규범적이고 시장유인장치처럼 관리 단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꽤 다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은 C&I 과정의 자료가 인증제도 표준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증된 산림에 대한 정보가 C&I 과정에 다시 첨가될 수 있음을 말한다.

산림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심의되어, 1996년에는 인증제도에 관한 회의가 2회 개최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브리스에서 개최된 첫번째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개최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해도, 인증제도가 각 산림관리에 추가되고, 국내차원과 국제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인정되어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유용한 제언을 하였다.

- ① 접근 개방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산림,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그리고 기술자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는 것
- ② 균형성(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무역규제를 하지 않을 것)
- ③ 신뢰성

④ 오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
⑤ 비용효과가 높은 것
⑥ 관계자 전체가 참가할 수 있는 참가방식
⑦ 실행가능하고 실제적일 것
⑧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련한 것
인증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관심중의 하나로 소규모 산림소유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다소 많이드는 것이다. 이것은 간과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증기관을 위한 FSC의 가이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인증된 산림의 목록으로 판단컨데 이점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세계의 소규모산림소유자와의 대화를 추가하고, 타인의 의견 등을 확실히 인증과정에 반영하려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사회경제적 내용

1) 비용

인증제도는 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일단 성공적이다. 이러한 비용은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 인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산림관리의 개선비용

① 보다 적은 생산

저수준의 생산요구는 수확수준을 연간생산량으로 조정하고 목재, 비목재 재화 그리고 산림에서 서비스에 피해를 줄이는 요구가 뒤따른다. ha당 낮은 수준의 목재생산에 의한 수익 감소는 벌채비용 삭감의 가능성으로 보상받을 것

이다. 더우기, 양호한 계획은 폐잔물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잔존 임분에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비목재 산물 즉, rattans와 열매들을 보다 양호하게 보호하는 결과로 수확량을 늘린다.

② 계획에서 투자의 증가

많은 연구들이 관리개선에 연관된 비용에 대해 이루어졌다. 비록 이들연구 중 몇몇의 연구에서 보다 낮은 계획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지적 한다. 관찰자들 또한 지속적인 관리의 주된 장애요인으로서 단기 유인제의 결여를 들고 있다.

③ 비용과 편익의 다른 분배

시기에 따라서 비용의 다른 배분의 영향은 이자율에 의존한다.

나. 산림관리의 인증비용

지역 전문가에 의한 산림인증비용은 운영규모에 따라서 연간 ha당 US\$0.01 ~ 1.3로 추정되었다.

다. 생산인증(유통과정)

유통과정의 인증비용은 확실히 그의 복잡성에 의존한다. 수위스에서 추정액은 \$500에서 수입된 목재의 통관가격의 1%에 이른다.

5.3. 편익

가. 시장편익

잠재적인 시장편익은 시장접근과 가격(환경 프리미움)이다. 전자는 1999년 이후 인증된 목재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일부 시장분야에서 이미 현실성을 갖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시장연구결과 일부 소비자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경 친화적인 생산품에 대한 '환경프리미움'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ustainable Forestry and Mater Engineering연구소가 오레곤주, 워싱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목재시장의 생산자, 도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인증제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42%는 인증목재의 요구를 경험하였다 고 하였다. 응답자의 50%는 인증생산 품에 5%의 프리미움을, 40%는 10% 를, 그리고 30%는 15%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액 또는 희망에 대한 시장조사는 전반적인 추세와 재화 시장에서의 수요창출의 능력을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미국소비자들이 어떤 종류의 차를 선호하는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한 집중적인 시장조사후에 생산되었던 대형승용차인 Ford Edsel을 들 수 있다. 2년후, 이차는 \$3억불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생산중단 되었다. 한 시장전문가가 지적하듯이 Ford사가 더 고정적인 시장조건보다도 차구매 추세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외재소형차의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와 자동차업체가 Compact 차 시대의 도래를 주창하는 그해에 대형차 Edsel의 판매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나. 시장이외의 편익

생물의 다양성, 집수역의 보전, 그리고 산림거주자의 생활의 질 등과 같이

인정된 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일어진 시장이외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익은 존재하고 그리고 중요할 수 있다.

인증과정은 투자자를 위한 운영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에 대한 인증과 조절을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한다.

그린이미지에 대한 요구와 인증제도가 특정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 때문에 혁신적인 임산물 회사들은 인증제도에 사전접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이나 은행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ISO 9001 품질관리규격에 준하여 인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싶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US\$ 50,000 ~ US\$ 400,000(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인증을 취득하려는 기업의 경영간부가 기대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삭감과 이윤증대보다는 물론 효율성과 이미지의 향상에 관심이 깊다. 임업은 식재에서 벌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이 소요되고, 시장리더도 인증제도의 편익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다고 기대할 수 있다.

6. 미래의 동향

인증제도는 산림관리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인증되고 있다. FSC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관리를 인증하는 국

제적 시스템이다. FSC는 신뢰가능한 인증시스템에 요구되고 있는 규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존재의의는 NGO, 목재생산자, 무역기업, 그리고 원주민단체 등을 일체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이것들의 차이는 관계자는 여러가지 다양한 공통 이해를 갖지만, 이제까지의 산림관리에 관한 논의는 서로를 일체화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재삼에 걸쳐 다른 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들 관계자간의 관계는 인증제도로 더욱 일체화하였다. 그렇지만, 적절한 산림관리가 애매한 일반론보다는 3개의 구체적인 수단에 기초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 상황에 준한 명확한 기준, 전 산림에 적용하는 국제적 동의에 기초한 원칙, 그리고 독립된 검증이 그것들이다.

이와 같은 산림에 관한 방대한 조직이, 공동작업을 행하는 방법 및 정부와의 협력방법을 보일 때, 초기 산림인증제도는 산림관리의 개선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수단으로서 인증제도는 만능약일수는 없고,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대체되지도 않는다. 인증제도는 적절한 산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이 정해져 일을 때, 초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타 수단과 똑같이 어느 조건하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거나 혹은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정확한 활동을 적시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증제도는 총합

적으로 볼때 매우 유효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WWF는 정부, 목재생산자, 무역기업, 소매기업, 소비자 그리고 NGO에 대해 FSC, 그리고 FSC의 독자적인 산림인증제도, 제품의 추적 및 라벨링의 활동추진에 대해 이해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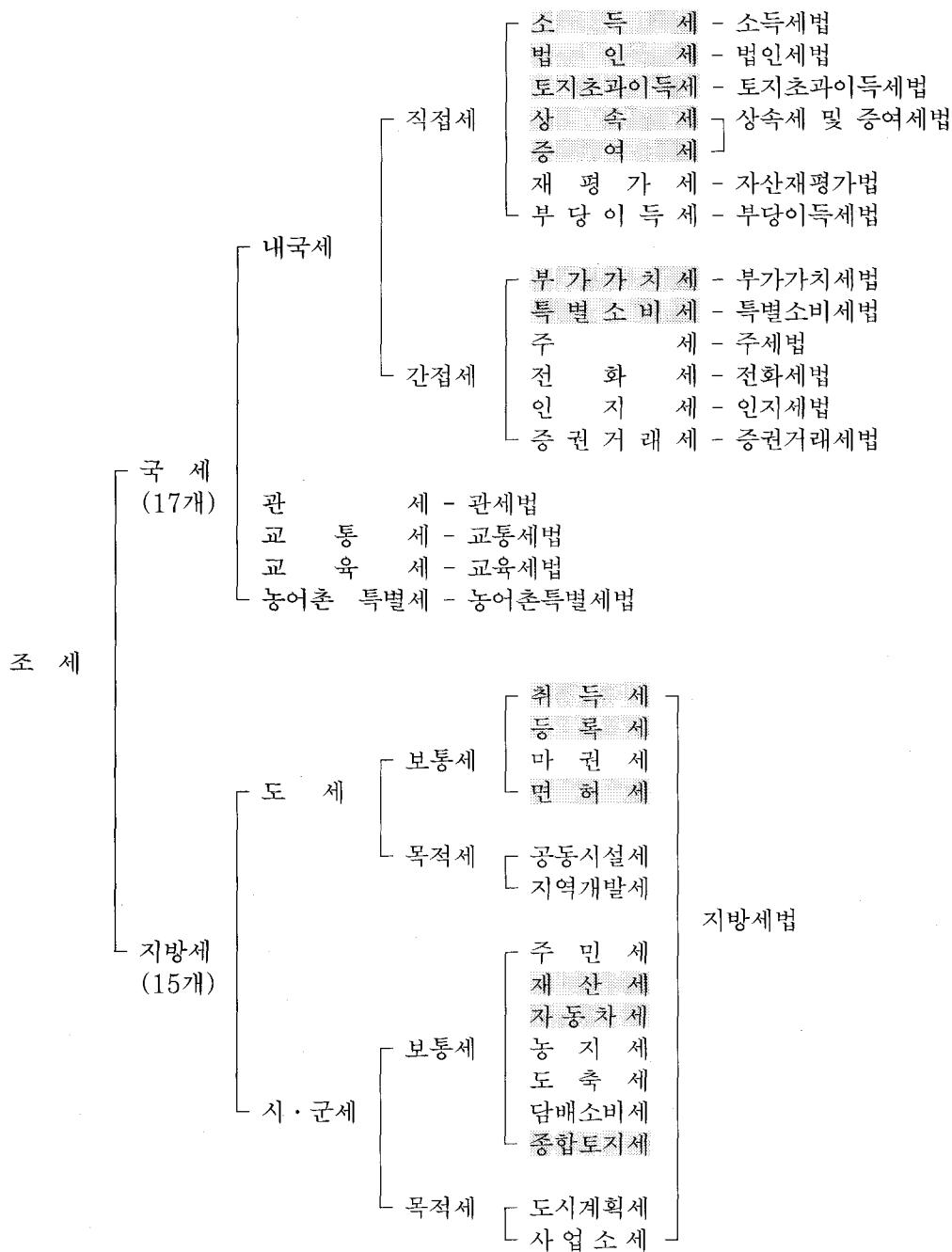
현재 FSC는 충분한 인식 가운데 지원받고 있다. FSC가 그 수단의 질, 정

화성, 그리고 투명성의 유지·향상에 간접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한, FSC는 산림인증제도에 해하여 세계의 리더로 지속될 것이다. 국내기준의 작성부터 산림감시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은 FSC 혹은 FSC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산림 그리고 산림을 쳐소로 하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에 대하여도 모범이 되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일세제안내①

1. 조세체계



2. 주요 국세개요

소 득 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 국세

법 인 세

-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에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특 별 부 가 세

-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 개인소유 유휴토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초과지가 상승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국가가 환수하는 세금

상 속 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유증등 원인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기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 여 세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당해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부 가 가 치 세

- 재화 및 용역의 생산·유통 등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재 산 평 가 세

- 법인의 자산평가시 재평가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농 어 촌 특 별 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3. 주요 지방세 개요

취 득 세

-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하여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

등록세

- 권리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자격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하는 조세

재 산 세

- 재산(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사용·수익하는데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징수)

종합토지세

- 토지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하여 누진세율 적용

농 지 세

-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면 허 세

- 면허·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마다 부과하는 조세

자 동 차 세

- 자동차 관리 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4. 임업분야세제지원 내용(요약)

〈국 세〉

혜택	대상	비고
소득세감면 50%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림후 10년이상인 다음 임지내 임목의 별채·양도로 발생한 소득(조감법 제97조)<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림계획지, 특수개발지역사업지-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혜택	대상	비고
양도소득세 면제 2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후 5년이상인 30ha 이내의 다음 산림지 (단, 조림기간 20년이상인 산림지는 100ha까지 면제) ('91. 12. 31 현재 소유자가 '98. 12. 31까지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특수개발지역사업지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p>※ 양도소득기본공제액 : 250만원(소득세법 제103조)</p> ○ 개인이 국가에 양도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 (조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년 미만 : 양도차액 10/100 └ 5~10년 미만 : " 15/100 └ 10년이상 : " 30/100 	추가('94) 기간연장('96) 확대('94) 신설('91)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톱의 5품목의 기계장비 - 고형복합비료등 비료 - 포스팜액제, 싸이론, 근사미, 반벨등 농약 (조감법 제99조4호 라목) (대통령령 제13,799호) ○ 임산물제조 의제매입세율 3/103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신설('93)
상속세공제	<p>〈상속세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공제액 : 임업상속인 4억원(일반 2억원) ○ 일괄 공제 제도 : 임업상속인 7억원(일반 5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1조) <p>〈영농상속 추가공제 조건〉</p> ○ 조림후 5년이상인 30ha 이내의 다음 산림지 (단, 조림기간 20년 이상인 산림지는 100ha까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특수개발지역사업지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p>(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p> 	확대('96) " 추가('94)

혜택	대상	비고
증여세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후 5년이상인 30ha이내의 다음 산림지 (단, 조림기간 20년이상인 산림지는 100ha까지 면제) ('91.12.31 현재 소유자가 '91.12.31까지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특수개발지역사업지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p>〈증여세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 5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 3천만원 ○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 5백만원 	추가('94) 기간연장('96) 확대('96)
토초세면제	<p>〈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림, 종교단체 소유임야(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보전임지 내 임야), 동유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임야, 종중림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 보전임지, 준보전임지('89.12.31이전에 영림계획 인가 받아 사업 중인 임지 및 '90.1.1이후 영림계획 인가받아 사업중인 소재 산주임야)중 영림계획지, 특수개발지역사업지 ○ 상속임야(상속일로부터 5년간 비과세)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11호) ○ 범시행일전 취득한 읍·면지역(시지역)임야로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시)에 2년이상 계속 재촌(시)한 자가 소유한 임야 6(3)년간 비과세(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 16호) ○ 사방사업지(토초세법시행령제23조제1호) <p>〈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독립가법인이 소유한 다음 산림지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사업지 (토초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 조림용 묘포장 토지중 보전임지내의 영림계획상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임야 (토초세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토초세법 제9조 제3항4호) 	종교단체임야 추가('94) 준보전임지 추가('96) 신설('92) 신설('94) 독립가법인 추가('94) 추가('91) 신설('94)

혜택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1이전 취득한 조림명령에 의한 임야로서 산업비림 기준상의 최소면적 (토초세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제1호) ○ 종종소유임야(토초세법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89.12.31이전 취득한 산업비림용 임야중 산업비림 소유 기준상의 최소면적 이내의 임야 (토초세법 부칙 제4조) <p>※ 토초세율 인하(토초세법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세율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30(30%) 1천만원 초과 : 3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50%) <p>※ 토지초과이득 기본공제 200만원(토초세법제11조의2)</p>	신설('92) 신설('94) 개정('94)

〈지방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p>〈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림, 동유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내 임야 ○ 자연보존지구내 임야 ○ 전통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채종림, 보안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 지적법에 의한 묘지, 사적지 (동시행령 제194조의7) ○ 임업협동조합 및 산림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 	신설('95) 신설('94)
	<p>〈분리과세〉 - 과세표준액의 0.1%~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특수개발사업지 ○ 문화재보호구역내 임야 ○ 자연환경지구내 임야 ○ 종종임야('90.5.31이전 취득분, '90.6.1이후 상속분 포함)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 보호 구역내 임야('89.12.31이전 취득분, '90.1.1이후 상속분 포함)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90.5.31이전 취득분, '90.6.1이후 상속분 포함) 	개정('96)
		신설('94)

해 택	대 상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안의 임야 ○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임야 ○ 도시공원안의 임야(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별도합산과세> - 과세표준액의 0.3~2%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상가, 호텔, 백화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신설('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합산과세> - 과세표준액의 0.2~5%과세 ○ 주택지, 나대지, 잡종지, 부채지주농지, 법인소유농지 ○ 영림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등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임업후계자가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3조 제2항)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보전임지 100ha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50%감면(지방세법 제263조) ○ 산림계, 임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면제(지방세법 제264조 제1항) 	신설'94) 신설('97) 신설('95) 신설('97)
농 지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계·임협·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포지 농지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00조) 	신설('95)

5. 세제각론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

소득세법 제94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련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면제대상

'91. 12. 31 현재 산림지를 소유한 자가 '98. 12. 31까지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조림지(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 포함) 29만7천m³(조림기간 20년 99천m³)이내를 양도시

조감법 부칙 제11조

부칙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중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중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1998년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중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중여세를 면제한다.

50% 감면대상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

조감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62조제1항

제65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임협)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시행령 제62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2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 세율 : 과세표준액 3천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30이며, 3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9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6천만원초과 2천1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자산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미등기 양도자산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소득세법 제104조)